

총량관리사업장 TMS부착시 배출허용총량 재산정방안

□ 검토배경

- (배경) LNG, 부생가스 등 연료에 대한 배출계수는 비교적 명확하나 소각 대상인 공정 폐가스에 대한 배출계수 및 사용량의 산정이 불명확 또한, 시멘트 소성시설 공정 여건에 따른 배출량 차이 과다 발생
- (허가조건) 폐가스소각시설, 플레어스택 등은 사용하는 연료로 배출량 산정 및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, TMS설치시 실제 배출량으로 배출허용총량 재산정* (시멘트 소성시설에 대해서도 TMS부착시 재산정 허가조건 기입)
- * 지역 배출허용총량을 고려하여 재산정(법 제17조제2항) 참조

□ 재할당방안 및 절차

- (대상) 총량허가증에 TMS부착시 배출허용총량 재산정 허가조건 기입 시설
- (재할당방법) ① TMS 행정자료활용일로부터 3개월이상* 자료전송 + ② TMS 행정자료 활용연도부터 재할당**
 - * 월 중 15일 이상 TMS자료 전송시 1개월로 산입하고(정상측정으로 보기 어려우 경우 익월자료부터 활용), 3개월자료 활용이 원칙이나 월별 배출량 편차가 큰 경우 3개월이상 자료 활용가능
 - ** 3개월이상 월 배출량이 확정된 시점에 재할당, 전송기간의 평균자료로 연간 환산
 - ※ TMS 행정자료 활용(당해)연도의 배출허용총량: TMS 자료전송 전까지는 배출계수, 단위배출량, 자기측정의 실제 배출량으로 산정하고, TMS 자료전송 이후는 TMS 실제 배출량으로 산정함
- (재할당절차)
 - 1) (사업장) ‘TMS재할당 요청문서’ 허가기관 제출(첨부서류)
 - 가)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TMS 행정자료활용일자 문서 1부.
 - 나) 할당신청서(붙임1) 1부.
 - 다) 대기총량허가증(사본) 1부.
 - 2) (지자체) 할당검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로 할당협의
 - 3) (허가기관) 총량허가증 재교부

□ 향후 계획

- (절차안내)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에 관련내용 공지, 행정 기관·총량관리사업장에 안내메시지 발송